



2025년 경기도교육청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

2025년 경기도교육청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·확산

「공익신고·갑질신고」 신고자 **맞춤형** 보호 강화를 통한
부패 ZERO 및 **내부통제** 강화

2025. 6.

경 기 도 교 육 청
[감 사 관]

「공익신고·갑질신고」 신고자 맞춤형 보호 강화를 통한 부패 ZERO 및 내부통제 강화

I 추진배경 및 분석

- (추진배경) ① '22년 청렴도 평가에서 내·외부 부패경험 응답 발생 등 전통적 부패 여전히 잔존, 더욱이 반부패 시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인식 평가 중 「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 노력」 항목 가장 **저조** 지속 **하락**
 ☞ 신고자 보호 미흡 등 부패 관련 내부 통제력 결여

※ 「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 노력」 : ' 22년 66.5점(시도 대비 -4.4점) → ' 23년 63.8점(시도 대비 -5.6점)

원인
분석
(설문)

- ▶ 공익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부족, 외부 적발 부패사건도 발생
-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신고자 노출 및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69% 답변
-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기관의 처리 적절성에 대한 자체 안내 미흡

- ② '22년 청렴도 평가에서 「갑질행위」 가장 **미흡**, 내부체감도 4년째 **하락**

☞ 갑질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, 조직 내 부정적 인식 여전

※ 「갑질행위」 : ' 22년 62.5점(시도 대비 -4.1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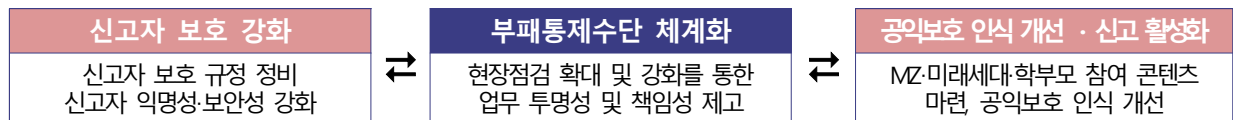
※ 「내부체감도」 : 81.6점(' 19년) → 79.8점(' 20년) → 79.2점(' 21년) → 78.4점(' 22년)

원인
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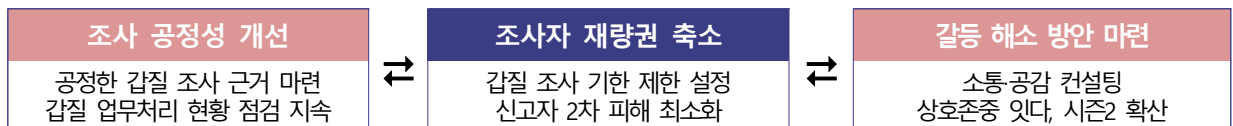
- ▶ 갑질 신고 현황 및 제도적 취약점 분석을 통한 신고자 보호 필요
- 조사자와 피신고자 간 유대 관계 형성에 따른 공정한 조사 한계
- 조사 기간 장기화('22년 최대 171일)시 신고자(피해자) 2차 피해 우려
- 갑질 재발 방지 장치 부재로 다수인 반복 신고 대응 부족

II 개선 전략

- ➔ (방향 1)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통제수단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



- ➔ (방향 2) 갑질신고자 보호를 통한 업무처리 개선 및 조직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



III 주요 추진내용

1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

- **1단계 (조례 개정)** 이해충돌·공공재정·불법찬조금 등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「공익 제보 운영 조례」, 「공익보호 업무 지침」 개정

- 비실명 대리신고 등 신고자 보호·보상 적용 근거 명문화

기존 “제2조제3호” (~2022년)	개정 “제2조제3호” / 지침(2023.9.)
공익침해, 청탁금지법, 행동강령, 예산 및 계약 위반, 권한남용 등	(기존) + 이해충돌방지법, 공공재정환수법 (신설) [지침] 운동부 불법찬조금 (신설)

- **2단계 (현장 점검)** 청렴콜, 현장 점검, 시민평가단, 실무추진단, 특정감사 등을 통한 현장 점검 확대 및 부패통제 강화

22년 (유지) ■ 시민감리단 30명(공사) ■ 시민감사관 24명(감사처분심의) ■ 실무추진단 72명(6개 분야) ■ 시군간 교차감사(공정·투명)	23년 (신설·강화) ■ (신설)경기미래교육 청렴콜(내외부 전화 모니터 1,734명) ■ (신설)운동부 학교 컨설팅(16개교, 학부모·코치 131명) ■ (신설)공약이행 시민평가단(5권역 구분, 30명) ■ (강화)시도간 교차감사 / 공공재정 부정청구 점검
---	---

※ 분야별·대상별 현장 점검 확대

- ✓ (경기교육 청렴콜) 운동부 학부모·계약상대자 등 7개 분야 실태 점검
- ✓ (운동부 학교 현장 점검) 운동부 운영, 불법찬조금 등 회계 운용 투명성 점검
- ✓ (공약이행 시민평가단) 학교운동부 재정 운용 등 65과제 정책 평가
- ✓ (청렴도 향상 실무추진단) 운동부 예산 운용 내역 상시 점검('23.3.)
- ✓ (공공재정환수제도 집중 점검) 제도운영 및 이행실태의 적정성 점검(연중)

- **3단계 (찾아가는 정책)** 미래세대·학부모와 함께하는 공익보호 인식 개선

- MZ세대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공익보호 “DO IT NOW” 음원 제작 및 공익보호 신고 제도 홍보 영상(MV) 자체 제작 및 전파
-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참여 소통공감의 날, 공익 신고 소재 포스터·사진·독후감 공모전, 불법찬조금 예방 표어 공모전운영
- 전국체육대회 기간 전후로 불법찬조금 및 공익신고 활성화 집중신고기간 운영
- 학부모, 학교관리자, 운동부지도자 대상 공익신고 안내 및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의무 실시
- (25개 교육지원청-시군체육회) 학교운동부 청렴사회협약 체결

2 갑질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

- **1단계 (조례 개정)** 고위직 관련 갑질피로힘 신고 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「시민감사관 운영 조례」 제5조제3항 신설 - **전국 최초**

- 갑질 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조치사항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고위직 직무감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화

개정(신설) 취지	“제5조제3항 제1~3호” 신설
조사자-피조사자 간의 관계로 인한 갑질 사안에 대한 공정 감사가 어렵다는 의견	전현직 교육장, 전현직 학교장, 4급 상당 이상 민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감사·조사 참여

- **2단계 (신고자 중심 제도 개선)**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, 신고자 2차 피해 최소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화하고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
- 갑질 사안 장기화 방지를 위한 갑질 신고 조사기한 60일 이내로 제한
- 갑질(공무원) 및 직장내 괴롭힘(교육공무직원) 업무의 감사관 통합 관리 체계 마련

‘22년 갑질처리절차 전면 개선(1차 개정)
- 조사과정(조사 전·중·후)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 → 피해당 사유 등 2차 민원 야기 방지를 위한 신고자 중심의 표준 답변안 등 포함 - 갑질·괴롭힘 신고창구 일원화(업무처리는 분리)

‘23년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(2차 개정)
- 갑질 조사 기한 60일 이내로 제한 → 60일 초과 시, 사유서 작성 및 점검 - 갑질·괴롭힘 신고처리,피해자 회복,교육 감사관 업무통합

- **3단계 (상시 지원체계)** 기관장이 앞장서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노력
- 다수인 또는 동일인 반복 갑질 신고 시 해당 기관으로 상담전문가 지원
 - 갑질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
 - 갑질 예방 소식지 · 감사사례집 자체 제작 및 배포
 - 갑질예방강사 인력풀 구성, 갑질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발간
 - 기관장과 함께하는 “상호존중 있다, 시즌 2” 소통·공감·나눔 문화 실천

IV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

장애 요인	① 신고자 보호 인식 및 관심 저조
	② 갑질 조사자의 업무 과중 호소 및 역량 차이
	③ 노조측 갑질 신고자 보호 및 조사 공정성 문제 제기

극복 방안	① 공익신고 홍보로 공감대 형성, (NEW)공직비리 익명 시스템 구축으로 신고 접근성 강화
	② 감사팀 인력 증원 및 조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지역별 역량격차 해소 등 현장 지원
	③ 신고자 2차 가해 모니터링 및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역할 확대

V 주요 추진성과

구분	공익신고자 보호 → ‘부패대응체계 확립’	갑질신고자 보호 → ‘갑질 근절 정책 안착’
조례 개정	✓ 신고자 익명성·보안성 최우선, ‘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’ 구축	✓ 시민감사관 실지감사에 154기관(627일), 처분심의회 7회 참여
집중 점검 (업무 개선)	✓ 공공재정 이행실태 점검 결과 환수율 42배 증가	✓ 갑질 조사자 표준 규정 준수여부 자체 점검 ‘23년 100% 이행 ✓ 갑질 조사 기한 60일 초과 건수 전년 대비 13%p 감소
부패 적발 (관행 개선)	✓ 내부 공익 신고 통해 1억 2천만 원 횡령 건 자체 적발	✓ 교육장 주관 회의 통한 관행 개선 예) 운전대 잡는 간부 출장 등 ✓ 학교관리자 등 갑질예방교육 총 64회 실시
현장 변화	✓ 공익보호제도 홍보 효과적, 인지도 상승 48.7%(4월) ⇒ 63.0%(9월)로 상승	✓ 동일 기관 다수·반복 갑질 신고 전년 대비 73% 감소(‘22년 56곳 → ‘23년 15곳) ✓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 인식 개선 효과적, 35.1%(4월) ⇒ 23.0%(9월)

VI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최근 부패근절을 위한 신고(공익·갑질)의 중요성과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 방안이 대두되면서 우리교육청의 신고자 맞춤형 보호 단계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자체 부패대응체계 작동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로 부패실태를 최소화하는 등 기관별 신뢰도 회복 지원

✓ 해당 사례가 ‘22년도~’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‘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’에 해당 여부	예 ■	아니오 □
✓ 과제 제출 년도 * (‘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‘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‘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‘22년 □	‘23년 ■
✓ ‘22년도~’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□	아니오 ■